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| | |
|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사업소개 | 3 |
| 사업 개요 | 3 |
| 사업 안내 | 3 |
| 장기·단기임대 | 3 |
| 자가거주 | 4 |
| 빈집 매입 | 4 |
| 신청 안내 | 4 |
| 기타사항 | 5 |
| 진행절차 | 5 |
| 장·단기 임대 | 5 |
| 자가 거주 | 5 |
| 빈집 매입 | 5 |
| 문의사항 | 6 |
| 문의처 | 6 |

빈집 리모델링 지원

사업 개요

- 사업목적: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한
- 신청기간: 상시
- 신청대상: 강진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
- 2023년 사업량: 45가구(장·단기임대 32, 자가거주 13)

사업 안내

◎ 장기·단기임대

- 지원대상: 등기부등본상 강진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
- 지원내용
 - ※ 강진군이 리모델링 시행

| 유형 | 임대기간 | 지원내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장기임대 | 5년 | 5,000만원 |
| | 7년 | 7,000만원 |
| 단기임대 | 6년 (군 연중 10개월, 소유주 2개월) | 5,000만원 |

- 지원조건
 - 장기임대: 강진군과 5년 또는 7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
 - 단기임대: 강진군과 6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, 6년 계약기간 중 연간 10개월은 군이, 2개월은 소유주가 사용

◎ 자가거주

- 지원대상: 강진군에 소재한 빈집을 소유한 자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강진군에 전입한 자 또는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
- 지원내용

※ 거주자가 리모델링 시행

| 유형 | 지원비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가거주 | 리모델링 공사비용 50% 지원 (최대 3,000만원) |


- 지원조건
 - 관외 거주기간 1년 이상, 전입 가구원 2인 이상 (단, 만39세 이하 미혼자는 단독세대 인정)
 - 전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


◎ 빈집 매입


- 대상: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 소유자
- 방법: 군 검토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빈집과 토지를 군에서 매입
- 활용: 빈집 철거 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주택 신축 등


신청 안내

- 신청장소: 빈집 소재 읍·면사무소
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우편신청
- 신청서류: 1)사업 신청서 2)각종 증빙서류 각 1부
 - 신청인 소유의 건물, 토지 등기부등본
 - 미등기 건물일 경우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주택 과세 대장(재산세 납부내역 등) 첨부
 - 위임장(상속 등의 문제로 명의 이전이 당장 불가한 경우)
 - 자가거주 신청시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 이력 확인)
- 지원 범위
 - 창호, 도배·장판, 방수, 외벽단열, 화장실(타일, 변기) 등 주택(빈집) 리모델링 (개·보수)에 소요된 공사비
 - ※ 가구 및 집기(옷장 등) 구입 · 설치 등은 건물 내 불박이장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
- 신청 제한
 - 현재 거주자가 있는 집
 -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
 -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(단,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)
 -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

 사업 신청서 hwp 다운로드

 위임장 hwp 다운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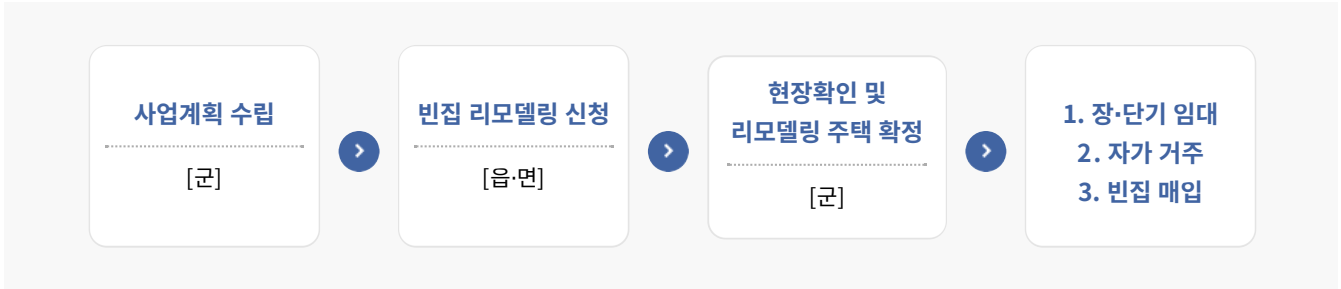
 부동산 (조건부) 사용대차 계약서 hwp 다운로드

 사업 협약서 hwp 다운로드

기타사항

- 제출한 신청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된 서류의 내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지원조건 불이행 시 강진군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
-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, 위반한 경우 「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,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임대기간(자가거주는 10년)동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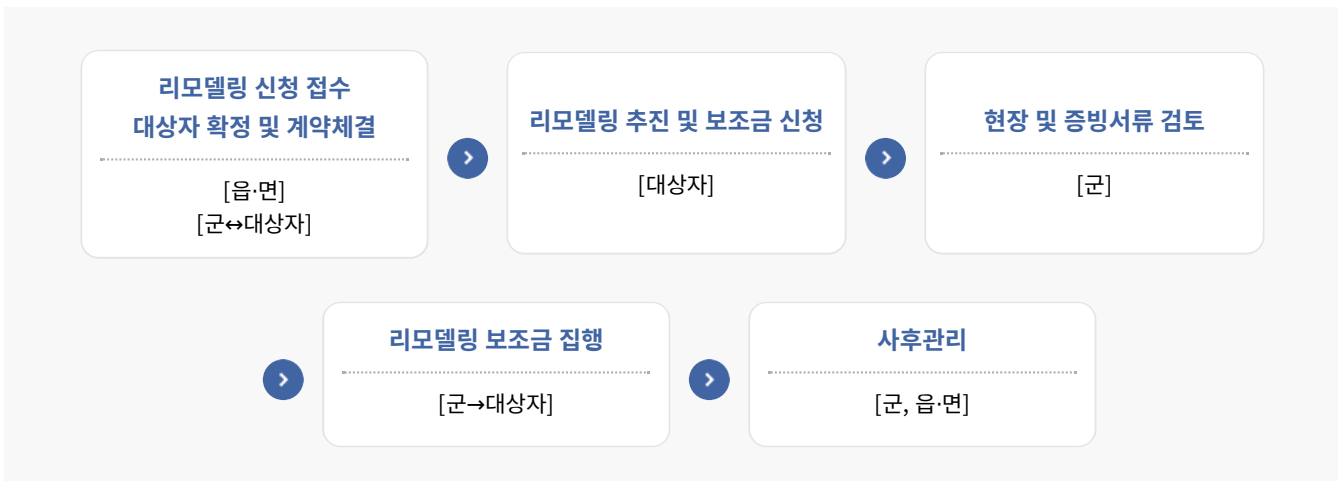
진행절차



⊙ 장·단기 임대



⊙ 자가 거주



⊙ 빈집 매입



문의사항

빈집 소재 읍·면사무소 및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

| 연번 | 부서 | 담당팀 | 전화번호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| 강진읍 | 건설팀 | 061-430-5738 |
| 2 | 군동면 | 총무팀 | 061-430-5523 |
| 3 | 칠량면 | 총무팀 | 061-430-5766 |
| 4 | 대구면 | 총무팀 | 061-430-5563 |
| 5 | 마량면 | 총무팀 | 061-430-5581 |
| 6 | 도암면 | 총무팀 | 061-430-5602 |
| 7 | 신전면 | 총무팀 | 061-430-5622 |
| 8 | 성전면 | 총무팀 | 061-430-5641 |
| 9 | 작천면 | 총무팀 | 061-430-5663 |
| 10 | 병영면 | 총무팀 | 061-430-5682 |
| 11 | 옴천면 | 총무팀 | 061-430-5702 |
| 12 | 인구정책과 | 주거지원팀 | 061-430-3073, 3088 |

문의처

-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☎061-430-3073, 3088

GANGJIN

Web Contents

